기금운용심의회규정

제정 : 2016.09.01
개정 : 2018.09.13
개정 : 2019.07.10
개정 : 2020.03.01
개정 : 2021.12.01.
개정 : 2022.12.0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라 한다.)의 적립금 등 특정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 라 한다.)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8. 09. 13.>

제2조(기능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8. 09. 13.>
1.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<개정 2018. 09. 13.>
2.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<개정 2018. 09. 13.>
3. 그 밖의 심의회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개정 2018. 09. 13.>

제3조(구성) ① 심의회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,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원, 직원, 학생을 각각 2명이상, 동문 및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인사 1명 이상,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8. 09. 13., 2022. 12. 01.>
② <삭제 2018. 09. 13.>

제4조(임기)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 다만, 총학생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<개정 2019. 07. 10., 2021. 12. 01.>

제5조(회의)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심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회의를 소집한다. <개정 2018. 09. 13.>
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<개

정 2018. 09. 13.>

제6조(관계부서와의 협조) 심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자료 제출 및 기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09. 13.>

제7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인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09. 13.>

제8조(간사)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 <개정 2018. 09. 13.>
②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며,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을 개신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09. 13.>

제9조(사무관장) ① 심의회 사무는 사무처에서 관장한다. <신설 2018. 09. 13.> <개정 2020. 03. 01.>

제10조(비밀유지) ① 위원 및 간사는 회의내용과 대학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 09. 13.>

제11조(운영세칙) ①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운영 지침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 <신설 2018. 09. 13.>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